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4 - 43 - 159호(사건번호 : 201407조사020)

안 건 명 (주)베가스타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베가스타(대표 나영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
타워 401호

의결연월일 2014. 9.24

주 문

1.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vegadisk.com) 공표 문안 >

<p>제목</p>	<p>(주)베가스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p>
<p>내용</p>	<p>저희 회사((주)베가스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6월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고 실제로는 고지한 것과 다르게 혜택을 주는 등 허위 과장으로 고지한 행위 및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月)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베가스타 대표이사 ○○○</p>

3.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웹사이트(www.vegadisk.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안심체크)을 하면 500포인트 혜택을 준다고 알리고 있으나, '14. 1월부터 6월까지 아이핀, 안심체크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500포인트 혜택을 주고 휴대폰으로 인증한 65,572명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14. 1월부터 6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한 회원 336,556명에게 결제한 월(月)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여 본인인증을 유도한 다음, 실제로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은 행위 및 휴대폰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월(月)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 나목 - 제4호에 해당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vegadisk.com) 공표 문안 >

제목	(주)베가스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내용	저희 회사((주)베가스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6월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고 실제로는 고지한 것과 다르게 혜택을 주는 등 허위 과장으로 고지한 행위 및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月)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주)베가스타 대표이사 ○○○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9.2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